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47 발의연월일: 2025. 4. 30.

발 의 자 : 윤한홍 • 권성동 • 김기현

김선교 • 박상웅 • 박형수

서일준 · 송언석 · 엄태영

최수진 • 박수영 • 김도읍

박덕흠 • 서지영 의원

(14일)

제안이유

1970년 처음으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은 현재까지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토 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입주기업에 토지 소유권이 없다 보니 공장 증설 등 투자 결정이 쉽지 않아 자유무역지역이 낙후된 채 방치되는 상황임. 최근 시설 노후화, 담보 부족에 따른 대출 제약 등 임대 방식의 한계가 나타나며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토지 분양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해 분양을 허용함으로써 생산시설 재투자와 신규기업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입주 계약 체결 의무 및 취득 토지에 대

한 처분제한 기간 등을 신설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사용자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자유무역지역법의 목적으로 추가하고, 입주 기업체의 디지털전환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조 및 제49조).
- 나. 물품의 반입·반출 및 관리와 관세 등의 부과 및 감면에 대하여 입주기업체등에 유리한 경우 관세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세법 예 외 적용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 다.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의 입주자격 예외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기준건축면적률, 출입국관리의 특례를 신설함(안 제10조, 제14조, 제 48조의2).
- 라. 토지 또는 공장등의 취득자에 대한 입주계약체결의무를 부과하고, 기간 내 입주계약 미체결시 처분의무를 부과함(안 제11조).
- 마. 입주계약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주계약 해지 시 토지 또는 공 장등의 처분의무를 정비함(안 제15조).
- 바. 국유인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 시 관리권자에게 매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각 상대방의 자격 제한 등 매각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 매각금액에 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른 매각가격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7조).

- 사. 공유인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절차를 정비함(안 제18조)
- 아.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기간을 신설하고, 관리권자에 의한 양수인 선정 시 비용징수, 토지 또는 공장등 임대료 등의 제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
- 자.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과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26조의2, 제26조의3).
- 차. 토지 또는 공장등 소유자에 대한 공동시설 유지비 납입 의무 및 관리권자의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조사, 관리·감독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8조, 제55조의3).
- 카. 토지 처분제한 기간 내 토지 처분에 대한 벌칙과 입주계약 미체결에 따른 토지 처분의무 및 관리권자의 보고명령 등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고, 과태료의 감면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제60조, 제70조).

법률 제 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정·운영함"을 "지정·운영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함"으로, "지역개발"을 "지역개발과 산업경쟁력강화"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물품의 통관"을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사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제6호"를 각각 "제5호" 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자유무역지역"을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제25조제7항에 따라 분할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은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 장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체결하 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세관장과의 사전협의를 위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제5항의 기간 내에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5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며, 이 경우 "제33조제8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리권자가 이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건축면적률을 달리 정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입주계약"을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6. 제11조제6항(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제15조제

6항, 제25조 또는 제26조를 위반하여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분할·임대(전대를 포함한다)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

- 7. 입주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8.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9. 공장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하는 경우

제15조제4항 중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제25조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다만, 토지의 처분에 한한다.

제17조제1항 중 "공장등에 대하여"를 "공장등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매각계획을 수립하고,"로, "대통령령"을 "입주기간 및 수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입주기업체등"을 "입주기업체등 또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의 원활한 운영과 임대 또는 매각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그 계약에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입주기업체"를 "입주기업체 또는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로, "경우"를 "경우 그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르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지원업체"를 "지원업체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로, "경우"를 "경우 그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르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 ⑤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지가상승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지가상승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토지취득자로부터 이를 기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기부 금액에 상응하는 재원을 확보하여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의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입주기업체등"을 "입주기업체등 또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의 원활한 운영과 임대 또는 매각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그 계약에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그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입주기업체"를 "입주기업체 또는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지원업체"를 "지원업체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9호의2"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의2"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입주기업체등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 는 바에 따라 처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1.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 2.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토지 또는 공 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 3.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경과 전 토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다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때를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때로 본다.

제2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도인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양수인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제3항 중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을 "취득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위에 건축한"을 "입주기업체등은 제3항에 따라 토지 또는"으로, "관리권자"를 "사전에 관리권자"로, "신고"를 "신고하고, 계약상대방의 입주자격에 관하여 관리권자와 협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

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입주기업체등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제3항에 따라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임대료 또는 사용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입주기업체등"으로, "산업용지"는 "토지"로, "관리기관"은 "관리권자"로 본다.
- ①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양도, 분할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 제목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등)"을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등)"으로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가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으로, "처분 또는 사용"을 "처분"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한 자가 입주자격을 갖추고 당초 계약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 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3호) 중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2호"로, "제25조제5항"을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이행강제금) ① 관리권자는 제11조제6항, 제15조제5항·제6항, 제25조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내 소유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 또는 양도할 의무(이하"이법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 또는 양도할 의무"라 한다)를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 또는 양도하여야할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재산가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는 이 법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 또는 양도할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 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 다.

- ③ 관리권자는 이 법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 또는 양도할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 관리권자의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제2항 및 제3항,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입주기업체등"으로, "산업용지"는 "토지"로, "관리기관"은 "관리권자"로 본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 이행강제금에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의3(과징금) ① 관리권자는 제11조제6항, 제15조제6항, 제25조제 1항·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 을 처분 또는 양도한 자에게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관리권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③ 관리권자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

- 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④ 관리권자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내에 과징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 과징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 납부, 징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입주기업체등"을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소유자(제25조제3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입주기업체등"으로 한다.

제37조제4항 중 "제209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9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제4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주세법」 제31조제1항제1호"를 "「주세법」 제20조 제1항제1호"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호"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례법」 제4조제1호"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부담금의 면제)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속한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9조제1항 중 "인력양성"을 "인력양성 또는 디지털전환"으로 한다. 제6장에 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5조의3(보고 및 검사 등)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또는 공장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입주기업체등에 대하여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또는 공장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입주기업체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또는 지도·감독 및 조사

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1호의2 및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법률 제20699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2항 중 "제15조제5항·제6항"을 "제11조제6항, 제15조제5항·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따른"을 "따른 토지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바에"를 "부과기준 또는 감면기준에"로 한다.
 -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권자의 지도·감독 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로운 제	제1조(목적)
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	
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u>지</u>	<u>지</u>
<u>정·운영함</u> 으로써 외국인투자	정・운영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	지원함
의 원활화 및 <u>지역개발</u> 등을 촉	지역개발과 산업경
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	<u> 쟁력강화</u>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유무역지역에서는 이 법에 규정	
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물품의 통관</u> 에 관하여 이 법	3. <u>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사</u>
보다 「관세법」을 적용하는	<u> </u>
것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	
<u>۴</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입주 자격) ① 자유무역지	제10조(입주 자격) ①
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ストモ	그 히	-[]
^r	드	

- 1. · 1의2. (생략)
- 2. 제조업종 또는 지식서비스산 업에 해당하는 업종(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의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비중 및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만,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수출비중을 적용하지아니한다.
- 3.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제4호부터 <u>제6호</u>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4. ~ 8. (생략)

② (생략)

제11조(입주계약) ① 자유무역지

1. · 1의2. (현행과 같음)
2
<u>মা5ই</u>
3
제5호
4.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1조(입주계약) ① <u>자유무역지</u>
<u></u>

자는 관리권자와 그 입주에 관 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②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역에 있는 토지(제25조제7항에 따라 분할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장등을 취득 한 자 또는 자유무역지역-----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 제1항의 입주계약 또는 변경 계약은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 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 또 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 4항에 따른 세관장과의 사전협 의를 위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⑥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제5 항의 기간 내에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해 당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 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에

⑤ (생략)

- 제14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저 등) ①・② (생 략)
 - ③ 제조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의 적용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 <단서 신설>

④·⑤ (생 략)

- 제1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제 (생 략)
 - ②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등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입주계약을</u>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

따라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⑦</u> (현행 제5항과 같음)
세14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용하며, 이 경우 "제33조제8항
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은 "자유
무역지역"으로 본다. <후단 삭
제> 다만, 관리권자가 이를 적
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건축면적률을 달리 정하거
나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⑤ (현행과 같음)
세1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현행과 같음)

----- <u>산업통상</u>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

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입주기업체 등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신 설>

3. • 4.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호의 경우 관리권자가 시정을 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 <단 서 삭제>

- 1. 2. (현행과 같음)
-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 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에서 정 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4.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 6. 제11조제6항(변경계약을 체 결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제15조제6항, 제25조 또는 제2 6조를 위반하여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 ·분할·임대(전대를 포함한 다)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
- 7. 입주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를 신고하지 않은 경 우
- 8.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 6. (생략)
- ③ (생략)
-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 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외국물 품,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 신고를 한 제29조제1항제2호 • 제3호의 물품, <u>「수출용원재료</u> 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4조제3호에 따라 관 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 안으 로 공급한 물품(이하 "외국물품 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 서 그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 다)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잔여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 밖 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입주기업 체에 양도하여야 한다.
- ⑤ (생략)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u>경우</u> 제25조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
상 그 사업을 휴업하는 경우
10. (현행 제6호와 같음)
(4)
「수출용 원재료
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
⑤ (현행과 같음)
⑥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9 공장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제2항 및 같은 조 <u>제5항</u>에 따라 <u>하는 기간 이내에 ------</u>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 ------ <u>제6항</u>-----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신 설>

⑦ (생략)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u>제6항</u>
,
1. ~ 3. (현행과 같음)
4.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제2
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기간
이 경과하기 전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다만, 토지의 처
분에 한한다.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
의 임대 및 매각) ①
공장등을 매각할 필요가 있
는 경우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u>입주</u>
기간 및 수출비중 등을 고려하
<u>여 대통령령</u> <u>입주</u>
기업체등 또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 이 경우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의 원활한 운영과
임대 또는 매각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그 계약에 필요한 조건

- ②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그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44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가격을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있다.
- ③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일 주기업체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 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 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국 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 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 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관리권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5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 을 갱신할 수 있다.
- ④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u>지</u>
 <u>원업체</u>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
 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
 는 <u>경우</u> 그 임대기간은 「국유

- 을 부가할 수 있다.
- ②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매각할수 있다.

- ③ ----- 입 주기업체 또는 제10조제1항제1 호부터 제5호까지의 입주자격 이 있는 제3자--------- 경우 그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권 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 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르 며, ---. 지

재산법 : 제35조제1항 및 제46 | 산법 :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 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관리권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 을 갱신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르며, ---. --

⑤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토 지의 매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지가상승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 제2조제3호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지가상승분이 발생하 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5 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취득 자로부터 이를 기부받을 수 있 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기부 금 액에 상응하는 재원을 확보하여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업 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국유의 토지 또 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8조(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 제의 임대 및 매각)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관리권자와 협의를 거쳐 <u>입</u>주기업체등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공유재산 및물품 관리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30조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 경우 필요하면 그 가격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u>입주기업체</u>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제18조(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
의 임대 및 매각) ①
이 H
주기업체등 또는 입주자격이 있
<u>는 제3자</u> <u>이 경우 지방자치</u>
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의 원
활한 운영과 임대 또는 매각 계
약의 이행을 위하여 그 계약에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u></u>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
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그 방법
 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
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후단 삭제>
(3)
<u>입주기업체 또는 제10조</u>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

그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 조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업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①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

4
지원업체 또는 제10조제
1항제6호의 입주자격이 있는 제
3자
20조(임대료의 감면 등) ①
<u></u> 「외국인투
<u> </u>
의2
<u>· 1</u>
_ _

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비수 도권 국내복귀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보아 같은 법 제1 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5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한) ① 입주기업체등은 제14 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같은 조 제4 항 전단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 고 전에 제17조제1항, 제18조제 1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토지(이 조 제6항에 따라 라 분할된 토지를 포함한다) 또 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 는 이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여 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한) ① 입주기업체등이 취득 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한 다.

- 1.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

 립등의 완료신고 전 토지 또

 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 2.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사 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 오
- 3.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간 경과 전 토지를

②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입주기업체등으로 하여금 관리권자가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등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입주기업체등이 <u>제14조제2</u> 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 고 후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 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 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 또는 임대[전대(轉

처분하려는 경우. 다만, 공장
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
개시의 신고 후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
한 때를 공장설립등의 완료신
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때로 본다.
②
이 경우 관리권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도인에게 실비의 범
위에서 양수인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u>취득한</u>

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 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 하게 하는 경우 그 계약 당사자 는 입주기업체등이나 입주 자격 이 있는 제3자로 한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위에 건축한 공장등을 양도 또 는 임대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때에는 관 리권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 야 한다.

<신 설>

<u>⑤</u> ~ <u>⑦</u> (생 략)

<신 설>

④ 입주기업체등은 제3항에 따
<u>라 토지 또는</u>
<u>사</u>
전에 관리권자 신고하고,
계약상대방의 입주자격에 관하
여 관리권자와 협의
⑤ 입주기업체등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제3항에 따라 임
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임대료 또는 사용료는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을 초과할 수 없다.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
한 사항 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u>, , , , , , , , , , , , , , , , , , , </u>

<신 설>

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①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 또 는 공장등을 경매나 그 밖에 법 률에 따라 취득한 자는 다음 각 ----- 자가 제11조에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따라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입주기업 체등"으로, "산업용지"는 "토지" 로, "관리기관"은 "관리권자"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 한 사항 외 자유무역지역에 있 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 한, 양도, 분할 등에 필요한 사 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등)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

다만, 입주기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한 자가 입주자격을 갖추고 당초 계약한 업종의 사업을 하 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

을 체결할 것. 다만, 입주기업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 체를 인수 또는 합병한 자가 입주 자격을 갖추고 당초 계 약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 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 으로 본다.

- 2. 제1호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 결(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 기업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
- 3. 제2호에 따라 양도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 권자에게 양도할 것
-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권자 ② 제1항제2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격 에 관하여는 제25조제5항을 준 용하다.

<신 설>

할 것

<삭 제>

<u>2</u> .	제1호

----- 제25조제6항-----

제26조의2(이행강제금) ① 관리권 자는 제11조제6항, 제15조제5항 ·제6항, 제25조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내 소유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 또는 양도

할 의무(이하 "이 법에 따른 토 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 또는 양 도할 의무"라 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이 행을 명할 수 있고,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처분 또는 양도하여야 할 토 지 또는 공장등의 재산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감정평가법 인등의 감정평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는 이 법에 따른 토 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 또는 양 도할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 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③ 관리권자는 이 법에 따른 토 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 또는 양 도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 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 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u>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u> <u>하여야 한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 관리권자의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제2항 및 제3항,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입주기업체등"으로, "산업용지"는 "토지"로, "관리기관"은 "관리권자"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 이행강제금에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과징금) ① 관리권자는 제11조제6항, 제15조제6항, 제25조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 또는 양도한 자에게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다.

<신 설>

② 관리권자는 과징금을 부과받 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 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 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 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권자는 과징금납부의무 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 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 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 하지 못한다.

④ 관리권자는 과징금납부의무 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내에 과징금 및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 제2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① 관 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안의 공동시설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유지비"라 한다)을 <u>입주기업체</u>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① ~ ③ 지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외국 물품의 매각에 관하여는 「관세 법」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 208조제1항 중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장치기간 이 지나면"은 "매각 요청을 접 수하면"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한 사양 외 과상금 또는 가산금
의 부과, 납부, 징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u>한다.</u>
세2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①
<u>자유무역지</u>
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소유자(제25조제3항에 따라 토
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한 경우
는 제외한다) 또는 입주기업체
<u><u><u> </u></u></u>
②·③ (현행과 같음)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4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 및 <u>제2</u> 09조제1항 중 "외국물품"은 각 각 "매각요청물품"으로 본다.

제41조의2(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 하는 물품은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 1. ~ 3. (생략)
- 4.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
 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 ~ 7. (생 략)
- ②·③ (생 략)

제45조(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① 입주기업체가 제29조제1 항제2호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u>「주세법」 제31조제1항제1호</u>, 「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수출하거나 <u>「수출용원재료에</u>

<u>법 제209조제1항</u>	
제41조의2(지식재산권 등의 보 ①	ই)
 1. ~ 3. (현행과 같음) 4. <u>「농수산물 품질관리법</u> 」	
 5.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관세등의 면제 또는 혹 등) ①	한급
「수출용 원재회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 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출 또는 공급하는 것으 로 보아 관세등을 면제하거나 확급하다.

②·③ (생 략)

제48조(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 제48조(부담금의 면제) 입주기업 입주기업체의 공장등에 대하여 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 | 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신 설>

동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

대한	관세	등	환급	글에	관한	특례
법_	제4조	[제]	<u>1호</u>			

②·③ (현행과 같음)

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 담금을 면제한다.

-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
-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 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제48조의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 입국관리법 | 제8조 및 제10조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업종에 속한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 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 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 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9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 제49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 동 지원 등) ① -----

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및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 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설>

인력양성 또는 디지털전환----

②·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의3(보고 및 검사 등) ① 관 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또는 공장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입주기업체등에 대하여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 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 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또는 공장등의 소유자ㆍ점 유자 또는 입주기업체등에 대하 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 와 감독을 할 수 있고, 소속 공 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또는 지도·감독 및 조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 2. (생략)

2의2. (생략)

3. ~ 6. (생략)

법률 제20699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

제70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제15조제5항·제6항 또는 제 26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 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 ③ (생 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25조제4항에 <u>따른</u> 공장등
 의 양도·임대 또는 사용에

원부렁으로 정한다.
제60조(벌칙)
1.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토
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u>1의2</u> . ~ <u>1의3</u> .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u>2</u> . (현행 제2호의2와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699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
제7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1조제6항, 제15조제5항ㆍ
<u>제6항</u>
.
③ (현행과 같음)
4
1 <u>따른 토지 또</u>
<u> </u>

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2. ~ 4. (생 략) 5. 삭 제 <u><신 설></u>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바에</u> 따라 세관장(제2항,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관리권자를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

2. ~ 4. (현행과 같음)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의3
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의 보
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자
<u>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의3</u>
제2항에 따른 관리권자의 지
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
나 조사를 방해한 자
⑤
<u>부과기준 또는 감면기준</u>
에